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5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9. (수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	의 원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서종수 의원 외 5인
- 제출일 : 2020. 11. 24.
- 회부일 : 2020. 11. 24. (의안번호 : 20-188)

2. 제출이유

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,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급식지원 대상 (안 제3조)
- 다.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,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 (안 제4조~ 안 제8조)
- 라. 아동급식위원회 설치,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 안 제17조)
- 마.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·안전 교육 등 (안 제18조)
- 바.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(건강한 심신의 보존)
-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(급식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기존사업 실시 중)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1. 19. ~ 2020. 11. 23.
- 2) 관계법령 : 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.
- 2016년도 한국보건사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의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아동(18세 미만)과 청년(18~25세), 노인(65세 이상) 등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이고 아동 빈곤율과 청년 빈곤율도 비율은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하위 5위에 해당됩니다.

- 과거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보호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, 최근 아동의 빈곤, 결식,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복지서비스가 도입·시행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2011년 8월 「아동복지법」이 전부 개정되고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(법 제35조).
-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, 지원기준, 조사위원회 운영 등의 절차를 제정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조례안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-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1)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제외된 사업입니다. 현재 아동급식은 「아동복지법」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로 지원 형태·규모·내용이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.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○ 2020년 11월말 현재,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인접구인 서대문구, 은평구를 비롯하여 14개 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.

1)▶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보조금의 대상사업·기준보조율 등)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, 경비의 종목,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▶ 「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(이하 "기준보조율"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

다만,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별표 2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

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의하였고,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지정을,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,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1에서 4로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 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 18조 및 19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·안전교육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

다만, 기 제정 되어 시행중에 있는 교육지원과 소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비교하여 볼 때 급식 지원대상,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대상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·보완하여 아동급식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
[표 1]

마포구 결식아동 및 급식 제공업체 현황

지원대상자 현황

<2020. 11. 기준>

지원 대상 구분	인원(명)
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)	245
꿈나무 카드 (동주민센터 신청자)	760
도시락 지원	120
계	1,125명

급식제공 꿈나무 카드 가맹점 : 103개 업체 <2020. 11. 기준>

[관계법령]

아동복지법

[시행 2020. 10. 8] [법률 제17206호, 2020. 4. 7, 일부개정]

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2.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- 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**
4.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**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

아동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0. 10. 1] [대통령령 제31068호, 2020. 9. 29, 일부개정]

- 제36조(급식지원)**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